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8. 2. 규정 제513호
개정 2013. 2. 12. 규정 제716호
개정 2017. 11. 1. 규정 제961호
개정 2019. 5. 15. 규정 제1029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1316호
개정 2026. 01. 26. 규정 제14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창업 활성화와 산학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2023. 12. 27., 2026. 01.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하며,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 2. 12., 2026. 01. 26.>
2. “신기술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3. “실험실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4. 삭제 <개정 2013. 2. 12.>
5.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6. “창업교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3. 2. 12., 2017. 11. 1., 2026. 01. 26.>
7. 삭제 <개정 2013. 2. 12.>
8. “재정기여”라 함은 대학 투입분에 대한 대가로서 창업교원이 제시하는 주식 분배, 로열티 지불, 발전기금 기부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01. 26.>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2017. 11. 1.>

제2장 창업절차

제4조(신청서 제출) ① 창업희망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5.>

1.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붙임서식) <개정 2026. 01. 26.>
3.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해당 시) <개정 2026. 01. 26.>

4.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개정 2026. 01. 26.>
 5. 실험실공장(설치, 변경) 승인신청서(제조시설 배치도 포함)(해당 시) <개정 2026. 01. 26.>
 6. 교원창업 협약서(안)(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01. 26.>
-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5., 2026. 01. 26.>
1. 창업기술 및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 및 운영 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 분배 및 로열티 지불 등 재정기여 계획 <개정 2026. 01. 26.>
 4.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 및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창업범위와 성격, 재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토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개정 2026. 01. 26.>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서류는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의 검토를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최종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 및 단장은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자 및 해당 창업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승인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① 총장은 제5조에 따라 창업신청을 승인한 경우 창업교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2026. 01. 26.>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 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 분배 및 로열티 지불 등 재정기여 계획
<개정 2026. 01. 26.>

4. 기술이전계약 체결 관련 사항 <신설 2026. 01. 26.>

5.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 관련 필요사항 <개정 2026. 01. 26.>

② 제7조에 따른 창업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협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1.>

제7조(창업기한) 창업교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창업승인은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창업교원의 요청에 따라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2019. 5. 15., 2026. 01. 26.>

제8조(검직) ① 창업교원이 창업으로 검직을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검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 3. 12., 2019. 5. 15., 2023. 12. 27., 2026. 01. 26.>

② 검직을 요청하는 교원은 제5조제3항의 승인결과를 교무과로 제출

하여야 하고, 겸직을 연장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산학협력단의 창업유지확인 공문을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5.>

제8조의2(폐업) 창업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원창업 폐업사실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5., 개정 2026. 01. 26.>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9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교원은 창업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제1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학내 전문가 또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경보고의무)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장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01. 26.>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
3. 법인으로의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5. 사업장의 이전
6. 그 밖의 회사의 주요사항 변경

제13조(창업승인 취소) 총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창업승인 취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 5. 15., 2026. 01. 26.>

1. 창업으로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 2013. 2. 12.>
2. 사전보고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6. 01. 26.>
3. 제6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7. 11. 1.>
5. 창업교원이 대학발전기금을 3회 이상 기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6. 01. 26.>
6. 총장의 검직 및 연장 허가 승인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정

2026. 01. 26.>

7. 기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재정기여) ① 창업기업은 창업활동의 허가 및 대학 투입분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2017. 11. 1., 2026. 01. 26.>

1. 보유주식의 5%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방식 <신설 2026. 01. 26.>

2. 매년 별표 1에서 정한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식(다만, 별표 1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경상이익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발전기금을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6. 01. 26.>

② 창업기업이 (주)국립부경대학교기술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발전기금 기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11. 1., 개정 2026. 01. 26.>

③ 창업교원은 발전기금 납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 개정 2023. 12. 27., 2026. 01. 26.>

제15조(기술이전계약) ① 창업교원이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01. 26.>

제16조(기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01. 26.>

부칙 <제513호, 2007. 8. 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6호, 2013.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 2017.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 2019. 5.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부 칙 <제1435호, 2026. 0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시행 후 새로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본교의 보유기술을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6.01.26.>

경상이익 규모별 비율과 한도액(제14조 제1항 관련)

경상이익	비율	한도액
3억 원 미만	4%	최대 900만 원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	최대 1,500만 원
10억 원 이상	1.5%	최소 1,500만 원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부(과)	
	직급		재직기간	년 월
	주소			
	연락처	(H.P)	(E-Mail)	
창업기업	기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예정일)		자본금	천원
	설립형태	☐ 법인 ☐ 개인		
	사업내용	업종	생산제품명	고용인력
(산업분류:)			명	

위와 같이 창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 [별첨] 1. 예비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2.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3. 실험실공장(설치, 변경) 승인신청서(제조시설 배치도 포함)(해당 시)
4. 교원창업 협약서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속 대학(원)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

20 . . .

회사명
[예비창업자]

1. 창업의 개요

☐ 창업자 인적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부(과)	
	직급		재직기간	년 월
	주소			
	연락처	(H.P)	(E-Mail)	
공동창업 교원/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부(과)	
	직급		재직기간/ 학년	
	연락처	(H.P)	(E-Mail)	

☐ 창업(예정)기업 개요

창업기업 정보	기업체명		설립(예정)일	
	소재지			
	자본금	천 원	설립형태	☐ 법인 ☐ 개인
	업 종		산업분류	
	생산제품명		고용인력	명

인력현황	직위	성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동업중)

설비현황	시설(장비)명	수량	가격(만원)	용도

창업동기 또는 목적	
---------------	--

2. 창업기술 사업계획

창업기술 개요	기술명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프로그램저작권 ☐ 기타(노하우 등)		
	등록(출원) 번호		권리자 (소유권자)	
	제품화 여부	☐ 여 ☐ 부		
기술의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기술의 차별성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 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 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기대효과	(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자금조달 계획				

3. 시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장 현황

수요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국내시장				
	국외시장				
	※ 작성근거 기재				

주요 수요처	수요처명		수요처의 규모	

경쟁업체 현황	국내시장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국외시장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판매전략	(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한 신청기술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	-------------------------------------

☐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	--

자금 조달계획	
------------	--

4.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공간사용	(창업에 따른 공간,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 등)
연구 기자재	(학교가 보유한 기자재)
지식 재산권	(창업기업이 활용하는 학교 보유 특허 또는 노하우 등)
참여인력 등	(창업 및 기술개발 등에 활용 예정인 학생, 연구원 등)

5. 대학 투입분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

주식 분배계획	(보유주식의 5% 또는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한 발전기금)
로열티 지불계획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등)

6.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

강의계획	(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
학생지도	(학생, 연구원 등 지도계획)
수행 중 연구과제	(수행 중인 연구과제 조치계획)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2.12., 2019.5.15., 2023.12.27., 개정 2026.01.26.>

교원창업 협약서(안)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원창업자 ○○학부(과) 교수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을”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창업대상 기술) “을”의 창업대상 기술은 ○○○○○○○(특허등록번호 제000호)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창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 사용) “을”이 교원창업 활동을 위하여 본교의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이 이에 따른 사용대가를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기여) “을”은 창업활동의 허가 및 대학 투입분에 대한 대가로서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이전계약) “을”이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공백의 보완) “을”은 소속 학부(과) 등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력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을”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명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 (인)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을”

성명 : ○○○○ (인)

소속 : ○○대학 ○○학부(과)

주소 :

교원창업기업 폐업사실 확인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 태	
종 목	

위 교원창업기업이 폐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폐업일자:
- 폐업사유:

붙임: 폐업사실 증명서류 1부.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소속 대학(원)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